

#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6780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	2204920	이만희의원	2024.10.25.	-제419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12.1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 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-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 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 2.4.) 상정
	2214218	어기구의원	2025.11.13.	-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 접 회부(2025.11.21.) -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 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 2.4.) 상정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2.04.)  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 
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0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12.19.)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,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·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##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범위 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”을 “운영비,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2조(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)        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<u>에서</u>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<u>행정적·재정적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(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)</p> <p>① -----            -----<u>범위에서</u>-----            -----<u>운영비,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</u>를 지원할-----.</p> <p>② <u>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</u></p>